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현재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의 사무처장(임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에 따라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무처장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나. 재단의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다. 사무처장과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라.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함(안 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4. 1. 26. ~ '24. 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범위 미포함 [기획실-1105(2024.1.16.)호]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기획실-1105(2024.1.16.)호](개선사항 반영)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923(2024.1.22.)호]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고,”를 “하고, 재단의 사무처장과”로, “군수가”를 “이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을 “임원 중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그 외 임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직원”을 “사무처장과 직원의”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경영실적 평가)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원)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이사는 재단의 사무처장과 군의 올림픽 유산사업,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3명 이내로 <u>하고</u>,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u>군수가 임명한다.</u></p> <p>④ 재단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0조(사무처) ① (생략)</p> <p>② <u>직원</u>은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6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하고, 재단의 사무처장과</u> ----- ----- <u>이사장이</u> -----.</p> <p>④ ----- <u>임원 중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그 외 임원</u>----- -----.</p> <p>제10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무처장과 직원의</u> -----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20조(경영실적 평가)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u></p>

제20조 · 제21조 (생략)

한다.

②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 제22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II. 임원의 인사

① 임명 근거

-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함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

가. 직무수행요건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별표 1 직무수행요건 예시> 참고

나. 자격요건 설정

-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함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생략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임원 후보자의 모집

가. 공개모집 원칙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함 (법 제9조 제2항)
 -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방식 등을 다른 임원과는 달리 간소화 가능
 - 다만, 임원의 연임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하도록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연락처	(033) 330 - 2018